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 권고안

- 영국 특허청 -

창조적인 기업의 성공을 돋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늘리기 위한 제안이 소비자부의 장관인 킴 하웰즈 박사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지식재산권 그룹의 이 보고서는 크리스 스미스 문화부 장관의 환영을 받았다.

하웰즈 박사의 지휘아래 1999년 5월 창조적 기업 업무 추진팀에 의해서 설립된 지식재산권 그룹은 모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식과 존중 정신을 개선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이 창조적인 기업의 성공에 기하는 기여도를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하웰즈 박사는 “지식 경제는 강한 지식재산권에 달려 있으며, 창작자 및 더 많은 시민에게 이러한 권리의 혜택에 대한 메시지를 개선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개선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창조적 기업과 저작권 사용권자들과 함께 일한 기회가 매우 소중하였다.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무척 많이 있다는 것을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으며 나는 이러한 작업을 주시해서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지식재산권 그룹의 직원들이 또한 이러한 작업이 실효를 거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장래의 작업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이번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었던 분들과 마찬가지로 조언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스미스 장관도 “우리의 창조적 기업은 성공

적이다. 그들은 한해에 600억 파운드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1천4백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연 평균의 2배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새로운 지식 경제의 중심에 있으며 창조적인 기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식재산권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더 나은 인식은 제고되어야만 한다. 이 보고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의 중요 권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에 대한 보다 나은 접근
-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큰 문제는 바로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 비록 법률 및 국제 조약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현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러한 형태의 재산권을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대체적 표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
2.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캠페인의 중요 부분은 바로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인식
-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기 위한 주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의 현재 수준을 평가
- 지식재산권에 대한 현재의 인식제고 수준의 척도는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를 참고하는 인식 캠페인이 먼저 있어야 한다.
3. 통일되고 조정된 지식재산권 정보의 출처의 필요성
- 사용자, 창작자, 기업계, 변리사계 및 법집행자들 모두에게 이용 가능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합리화하고 개선할 필요
 -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초 정보 출처의 핵심 개발
 - 산업 대학 및 중소기업 서비스 등과 같은 다른 정보 제공자를 서로 알려줄 수 있는 창구의 일원화
 -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창구의 일원화
4. 학교 교과목에 지식재산권 과목 개설
- 일반 학교와 고등 및 평생 교육을 포함한 주류 교육분야 내에서 사회과목에 포함하는 등의 지식재산권 과목에 대한 적절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인 이해 개선의 근원
 - 학교에서의 인식 개선이 실현되려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사들의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일반들에게 위조 및 불법복제물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
-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항하여 더 나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조 및 불법복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한국에 관한 미국 무역 평가 보고서

- 미국 무역 대표부 -

§ 2000년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000년도 외국 무역 장벽에 관한 미국 무역 평가 보고서” 중 한국 부분 (지재권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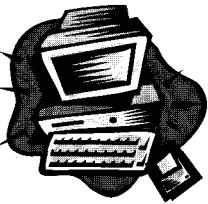
◆ 무역 요약

1999년에 한국에 대한 미국 무역 적자는 83억 달러였으며 이는 1998년의 74억 달러의 무역적자보다 9억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1999년에 한국은 6번째로 큰 미국의 수출 시장이었다. 1999년에 한미 양자간 상품 무역은 1998년의 404억 달러에 대비해 총 54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99년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액이 거의 230억 달러에 다다랐으며 이는 1998년의 160억 달러의 수치로부터 38.8 %

증가한 것이다. 한편 1999년에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313억 달러로 1998년의 239억 달러의 수치보다 30.6%가 증가하였다. 1998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74억 달러로 1997년보다 14.5%가 증가하였다.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주로 제조, 금융 및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 개괄

한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의 하나이면



서도 한국은 사업을 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장 중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 한국 대통령이 좀 더 개방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경제 정책을 펴겠다고 다짐하였고, 특히 금융 분야에서의 개혁을 해오기는 했지만, 예를 들면 기업 분야에서의 구조적 개혁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경쟁과 한국 및 외국 시장에서 시장접근을 방해해온 정부, 은행 그리고 재벌간의 불건전한 연계를 근절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연계는 또한 과도한 부채, 시설 과잉 및 비경제적인 투자를 야기했다. 경제 위기로부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어감에 따라 얼마간의 안도감이 심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9년 7월의 대우 기업의 도산 사태는 한국 정부를 자극하여 더 많은 경제 개혁 및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개혁을 연기함으로써 얻어지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한국 금융 분야를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재벌은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재정 및 기업 분야는 국제 사업 표준 및 관행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는 1999년에 경제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되었다. 경제 성장은 1998년에 거의 6%로 떨어진 이후에 10% 정도로 상승하였다. 인플레이션은 약 1%로 통제하에 있고, 실업률도 경제위기동안의 최고치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1998년에 급격하게 떨어졌던 한국의 대외 수입은 1999년에 28% 증가하여 1천 197억 달러에 다다랐으며 대외 수출도 한 9%가 늘어난 1천 44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의 대외 무역 흑자는 1999년에 245억 달러로 좁아지기는 하였지만 계속해서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에 한국의 무역 흑자는 더 좁아져서 125억 달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재산권 보호

▶ 개괄

한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과 법 시행을 강화하고 몇몇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1999년에도 여전히 스페셜 301조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머물러 있다.

WTO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무역 협정(TRIPS) 하의 의무에 따라 한국은 1995년에 4개의 법률(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을 통과시켰으며 1996년에는 새로운 저작권법, 컴퓨터 소프트웨어법 및 관세법을 시행하였다. 1997년에 상표법이 개정되어 (한국에서 등록된) 3차원 상표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1998년 3월 1일에는 개정된 상표법이 발효되었고 새로운 특허법원이 설립되었다.

▶ 특허 및 실용신안법

1997년 7월에, 심사 절차 및 항소 과정을 가속화하고 특허 침해범에 대한 벌금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한국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이 개정되었다. 미국 산업계에서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그리고 지배(dominant) 특허와 종속(subservient) 특허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결함이 남아있다고 믿고 있다. 부가적으로, 외국 특허의 국제 소유권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일관성이 없고, 외국 특허권자의 승인된 특허권도 침해당하기 쉬웠다.

1999년 1월에, 오랜 기간의 임상실험 및 국내 시험의 요건을 맞추어야 하는 특정 의약품, 농화학품 및 동물 건강 물품에 대한 특허 기간 연장을 제공하는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었다. 과거에는, 규정된 승인 과정에서 자연으로 인하여 특허보호의 기간이 상실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제는 수입된 약품과 국내 생산된 약품 모두 그러한 특허 기간 연장에 대하여 동등하게 자격이 있음을 확실히 하였다.

▶ 의약품의 실험 데이터 보호 문제

한국 정부는 의약품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보호 문제를 구제하기 위한 미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9년 2월에, 한국 식품의약청은 사실상의 데이터 보호를 4년 동안 보호해 주는 재심사 기간을 본래대로 6년으로 돌려놓았다. 부가적으로 2000년 1월에 국회는 한국정부에 제출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제출 회사가 보호를 요청하면 그 데이터의 보호를 제공하는 의약품관련법의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개정법에는 제출된 데이터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한국정부가 그 데이터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공공의 이익”에 대한 정의와 그러한 특별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남아있는 문제는 한국의 보건 및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식품의약청)과 지식재산권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특허청)간의 공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존하는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 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지어 관련 기관과 이러한 문제를 토론하는 것조차 피하고 있다.

▶ 상표법

1998년 3월 1일에 발효된 새로운 상표법은 심사관들로 하여금 “신의에 반하여(bad faith)” 이후 어진 등록을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 기업이 침해 상표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로 인해 미국기업이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휴면” 상표 등록에 대해서는 아직도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한국은 여전히 WTO TRIPS 협정 하에서 요구된 저작물에 대한 완전한 소급적 보호와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허 및 상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은 예술성과 창작성을 내재하고 있는 만화 캐릭터에 대한 보호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상표법은 한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몇몇 미국의 유명 만화 캐릭터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 한국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특정 직물 의장뿐만 아니라 그러한 만화 캐릭터에 대해서 보호를 확대하기를 지속적으로 거절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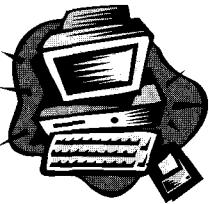
▶ 의장의 보호

한국은 오랫동안 침해상품 수출의 원천지가 되어왔다. 직물 의장은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이 아니라 의장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왔다. 그러나 직물의장에 대한 부가적인 보호는 2000년 7월 1일에 발효되는 최근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해서 부여받았다. 그러나 직물의장에 대한 보호는 아직도 적절하지 않으며, 몇몇 한국기업은 미국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직물의장을 불법복제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여 미국산 진정상품과 경쟁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제3국과의 무역에서 위조된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시키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한국 정부 공무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개정된 의장법은 1998년 3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러한 개정법으로 인하여 특허청은 의장권 보호기간을 늘리고 의장 출원 절차를 간소하게 함으로써 산업의장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었다.

새로운 의장 등록 제도는 직물에 대한 출원이 심사없이 등록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미국 직물 의장의 불법적인 등록의 양산을 가져왔다.

▶ 저작권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1999년 12월 7일에 한국 국회는 2000년 7월 1일에 발효되는 개정된 저작권법을 통과시켰다. 법개정은 대부분 전송권, 도서관에서의 복제, 형벌 및 배상목적의 손해배상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 저작권법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러한 염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1999년 12월에, 한국 국회는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CPPA)을 개정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개정된 법률은 2000년 7월 1일에 발효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독점적인 실시허락의 등록 등에 대한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000년 2월에 시작하여 개정된 CCPA에 대한 집행 언어의 초안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외국 산업계 및 정부의 투입이 요청될 것임을 확신하였다. 미국 정부는 개정된 CCPA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만족할 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 위조 및 불법복제 문제

지난 수년 동안에 걸쳐 한국 시장에서 복제 및 위조 상품의 근절에 대한 얼마간의 개선이 있었다. 행정 지침을 통하여, 한국은 1987년 이전에 창작된 특정 미국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및 불법 판매를 축소시켰다. 한국은 또한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하여서 그 동안에 관련 기관들은 불법복제물의 급습, 기소 및 다른 저작권 집행 활동에 전념하였다. 1999년에, 대검찰청은 3월부터 연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시작하여 1999년에는 33,338건(1998년 대비 약 92% 증가)의 침해사건을 적발하고 1,737건(1998년 대비 약 30% 증가)의 구속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 소프트웨어 산업에 따르면 외국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이 공공 부분을 대상으로 한 단

속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미국 기업 및 산업체에 따르면 또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내의 최종 사용자(end-user)에 의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다고 한다. 가정 및 교육기관에서의 불법복제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에 따르면 “소규모” 침해자에 대한 법 집행 조치가 어렵다고 한다. 마침내, 한국 정부가 정부에서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미국 기업은 그러한 노력의 효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한국 정부의 단속 노력의 지속성, 투명성 및 억제 효과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 영업비밀

불공정 경쟁 및 영업비밀에 대한 한국법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영업비밀이 얼마 정도 보호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은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면, 미국 기업, 특히 화학약품, 사탕 및 초콜렛 제조업자들은 등록 혹은 허가 절차로 제조공식 혹은 청사진과 같은 매우 자세한 제품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정부 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기업들에 의하면 기업의 기밀 정보의 누설은 한국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출된 정보는 한국 공무원들이 충분히 보호를 못하고 있다고 하며, 어떤 경우에는 한국 경쟁자 혹은 그 무역 제휴기업들에게 흘리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결론

한국의 TRIPS 협정 준수에서 발생된 문제, 특히 저작권 보호와 의약품 특허 및 시험 데이터에 대한 보호에 관한 문제는 양국이 양자간 투자 조약(BIT)에 서명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국 정부는 BIT 협상에서 한국정부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발행 2000. 07